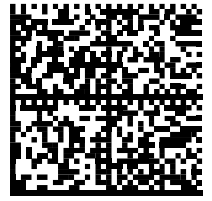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배상청구기준) 청약서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귀중

청약번호 : 932509927619

귀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배상청구기준) 보통약관 및 특약조항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배상청구기준)을 청약합니다.

○ 계약기본사항

계 약 자	주식회사 에르모어 (170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08 3층 (삼가동)	사업자(주민)번호	481-81-00697
피 보 험 자	주식회사 에르모어 (170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08 3층 (삼가동)	사업자(주민)번호	481-81-00697
보 험 기 간	2025년09월01일 부터 2026년09월01일 까지	청 약 일 자	2025년06월09일
첫 회 보 험 료	KRW 500,000	총 보 험 료	KRW 500,000

전문금융소비자여부	예	해당하는 경우 단체명	주식회사 에르모어
갱신계약여부	신규	공동인수구분	단독
납입방법	일시납 / 1회납	금종구분	현금
통신수단 이용 해지 동의여부	예	담보지역	대한민국
최근5년간사고여부	아니오	동일위험중복가입여부	무

○ 소재지

전국일원

○ 보장사항

가입대상	담보내역	화폐	보장/공제금액	보험료
하트팩류 일체	생산물(II) 일괄 1청구당 보상한도액	KRW	100,000,000	
	생산물(II) 일괄 총보상한도액	KRW	100,000,000	
	생산물(II) 일괄 1청구당 자기부담금	KRW	300,000	

○ 가입내역

가입대상	하트팩류 일체		
제품종류(배상청구기준)	J991	제품종류(배상청구기준)명	기타
담보제품명	하트팩류 일체	보험료기초종류	매출액
산출기초수	635,000,000 원	소급담보일자	2025.09.01
사업형태	수입업자(수입품판매업자포함)	인증마크대상여부	아니오

○ 기타 약관 및 보험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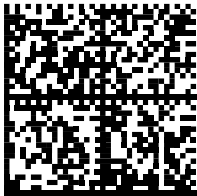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 (배상청구기준) 보통약관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II
정보기술 특별약관(사이버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사스(SARS) 등 유행성 전염병 부담보 특별약관

■ 취급부서 : GA 영업 7팀
■ 취 급 자 : (주)프로인스컴퍼니(보험대리점)
■ 모 집 인 : 이윤희(070-4009-3830) (고유번호:20200720002522)
■ 발행일시 : 2025년 06월 24일 17시 00분
■ 콜 센 터 : 1644-9002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7층
Tel. (02)2260-6800 / Fax. (02)2260-6702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배상청구기준) 청약서



청약번호 : 932509927619

※ 아래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 첨부하여 주십시오.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타계약	없음
보험사고내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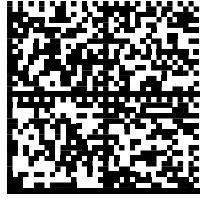
■ 취급부서 : GA 영업 7팀
■ 취 급 자 : (주)프로인스컴퍼니(보험대리점)
■ 모 집 인 : 이윤희(070-4009-3830) (고유번호:20200720002522)
■ 발행일시 : 2025년 06월 24일 17시 00분
■ 콜 센 터 : 1644-9002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7층
Tel. (02)2260-6800 / Fax. (02)2260-6702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배상청구기준) 청약서



청약번호 : 932509927619

■ 꼭 알아야 할 사항

보험가입시	1.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2.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 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약서 기재사항은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하고, 서명만은 계약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6. 보험료를 내실 때에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저희 회사에 보험료를 내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 4-31조) 7.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8.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 방법, 절차와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보험가입후	1. 보험증권을 받으시면 청약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서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6. 청약 후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8.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에 대한 의사 표시를 수령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아닌 보험회사에 존재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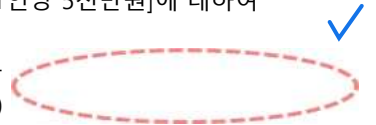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음성녹음, 전자서명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험상품설명을 충분히 듣고, 청약서상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청약하며,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정도를 과장하는 행위는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AIG 기업 안 2019-0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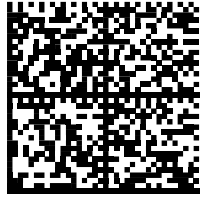
■ 취급부서 : GA 영업 7팀
■ 취급자 : (주)프로인스컴퍼니(보험대리점)
■ 모집인 : 이윤희(070-4009-3830) (고유번호:20200720002522)
■ 발행일시 : 2025년 06월 24일 17시 00분
■ 콜센터 : 1644-9002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7층
Tel. (02)2260-6800 / Fax. (02)2260-6702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배상청구기준) 청약서



청약번호 : 932509927619

■ 청약철회신청서

○ 본인은 아래 보험계약을 청약철회코자 하오니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권번호 : 통장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 통장을 기재하십시오

신 청 일 : 은 행 : 예금주 :

계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계좌번호 :

전화번호 :

'※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료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방문 제출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해 주시면 송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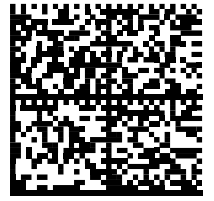
■ 취급부서 : GA 영업 7팀
■ 취 급 자 : (주)프로인스컴퍼니(보험대리점)
■ 모 집 인 : 이윤희(070-4009-3830) (고유번호:20200720002522)
■ 발행일시 : 2025년 06월 24일 17시 00분
■ 콜 센 터 : 1644-9002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7층
Tel. (02)2260-6800 / Fax. (02)2260-6702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배상청구기준) 청약서



청약번호 : 932509927619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

-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 근로자 5인 이상의 단체 등
-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 보험설계사 · 대리점 · 중개사

(예)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융협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보험관계단체, 보험설계사 · 대리점 및 중개사 등 보험모집종사자,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및 동일한 회사 · 사업장 ·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 관계법규 등의 확인을 거쳐 전문금융소비자 여부를 판정하며,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

- 또한,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동일한 대우)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환가능 소비자 예시)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기업성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여부 확인 ☒ 예 - 해당하는 경우 단체명(주식회사 에르모어)
☐ 아니오

-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 관련 확인 ☐ 예 ☒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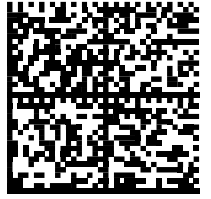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7항제3호(투자성 상품의 경우 제2호 포함)에 해당하는 전문금융소비자로, 관계법규에 따라 귀사로부터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함.

작성일자 : 년 월 일 ☒

계 약 자 : (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배상청구기준) 청약서



청약번호 : 932509927619

1. 소비자 안내 의무 사항에 대한 확인

▶ 본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미리 안내 받았습니다.

■ 예 □ 아니오

- ① 방문판매인력의 소속과 성명
- ② 권유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 ③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 ④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해당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 본 확인은 「방문판매 모범규준」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2. 소비자의 야간 연락 동의에 대한 확인

▶ 본인은 본 계약의 청약 이전에 야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8시)시간
방문 · 전화권유 판매를 요청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 본 확인은 「방문판매 모범규준」에 따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유지를 위해 야간 시간(오후9시~다음날 오전8시)의 방문 · 연락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

계 약 자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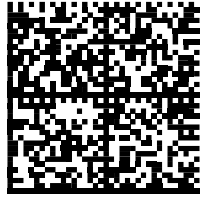
■ 취급부서 : GA 영업 7팀
■ 취 급 자 : (주)프로인스컴퍼니(보험대리점)
■ 모 집 인 : 이윤희(070-4009-3830) (고유번호:20200720002522)
■ 발행일시 : 2025년 06월 24일 17시 00분
■ 콜 센 터 : 1644-9002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7층
Tel. (02)2260-6800 / Fax. (02)2260-6702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상품설명서



청약번호 : 932509927619

사.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 회사용

상품 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번호	주요 설명 내용
1	보험회사 및 모집자에 대한 정보(소속, 지위)에 관한 사항 및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개요
2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를 통한 모집자의 주요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3	청약철회, 계약취소, 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보험계약(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
5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6	계약의 해지 및 무효, 해지환급금, 상품별 특이사항 등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7	예금자보호, 보험상당 및 분쟁조정절차 등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8	보험모집자의 업무범위(보험료, 고지의무 수령 가능 여부), 보험계약 전환, 소멸시효, 계약변경,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유의사항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확인 >

◆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상품설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 보험설계사 이윤희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에르모어 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 . . . 보험설계사 (인)

[보험계약자 확인]

• 보험설계사 이윤희 (은)로부터 상품설명서 내용을 교부받고 설명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보험계약자 (인)

< 금융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설명의 확인 >

■ 금융정보취약계층(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하시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신 고객께서는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십니까?(√ 체크)

☐만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예금보험관계 우선 설명 요청 고객

②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 들으셨습니까?

고객명 :

서명 또는 (인)

회사보관용

AIG 기업 안 2021-014호

■ 취급부서 : GA 영업 7팀
 ■ 취급자 : (주)프로인스컴퍼니(보험대리점)
 ■ 모집인 : 이윤희(070-4009-3830) (고유번호:20200720002522)
 ■ 발행일시 : 2025년 06월 24일 17시 00분
 ■ 콜센터 : 1644-9002

07326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7층
 Tel. (02)2260-6800 / Fax. (02)2260-6707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설문서

- 본 설문서는 보험가입의 기초자료로써 향후 보험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문서는 대표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은 책임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본 설문서는 보험료 산정 및 보험가입의 기초 자료로써만 이용되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외부기관 및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정보

상호/성명	(한글) 주식회사 에르모어				
	(영문)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08, 라파엘미디빌 3층				
업종구분	☐ 제조업	☒ 도매업	☐ 소매업	☐ 수출업	☐ 수입업
회사 설립일	2017년 06월 20일		수출 기간		
PL 보험가입경력	무	현재 보험가입 여부		☒ 미가입 ☐ 가입(보험사:)	

2. 담보 생산물 (필요한 경우 상품자료 또는 브로셔 첨부)

제품명	용도 및 기능	예상위험
핫팩류 일체	핫팩	

3. 담보 생산물의 연간매출액 (단위: ☒ 원화 ☐ US\$)

연 도	합 계	국 내	미국/캐나다/호주	유 럽	기타지역
2024년	635,000,000원	635,000,000원			

4. 보상한도액 및 가입조건 (단위: ☒ 원화 ☐ US\$)

지 역	보상한도액-1사고당 (a.o.o. / per claim)	연간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담보기준
국 내	1억원	1억원	30만원	☐ 손해사고기준 ☒ 배상청구기준 소급담보일자:
*음식물 등과 같이 대인보상만 담보하는 경우 1인당 보상한도액: 1인당				

* 1사고당과 연간보상총액은 같은 금액으로 설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소급담보일자는 배상청구기준시에 기입하며, 최초 가입 시에는 보험개시일자로 설정됩니다.

5. 과거 손해 상황 (5년간 사고현황 - 자기부담금과 방어비용 포함한 개별손해)

*사고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 첨부하여 주십시오.

사고발생일	관련제품	제조년도	사고내용	지급(예정)액	손해액산정일
무사고					

이 설문서는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작성자:

(날인)